
녹색구매 정책

(Green Procurement Policy)

최종 제·개정일	2026. 04. 30
개정 차수	0
문서 관리팀	프로세스운영팀

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근



1. 목적

캠텍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구매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친환경 녹색구매를 추진하고자 노력한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재활용 인증제품,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 산림경영인증 제품 등 기타 환경성이 인증되는 친환경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러한 친환경 물품구매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노력한다.

2. 범위

본 정책은 국내외 법인 및 임직원, 사내 협력사에게 적용된다.

또한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녹색구매 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본 녹색구매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 캠텍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 캠텍오토 루마니아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 장가항 캠텍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 캠텍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 및 협력사 등)

3. 개요

- 1) 녹색구매 개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구매로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구매 행위

2) 녹색구매 정의

녹색 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제품으로, 다음의 인증 제품 등을 포함한다.

- ① 환경표지제품 :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② 저탄소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③ 우수재활용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④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제품 : 대기전력 저감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우수한 1등급 마크 인증 제품
- ⑤ 산림경영인증(FSC) 제품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된 산림 자원을 사용한 인증 제품
- ⑥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3) 녹색 제품 기준

구분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 제품(GR)
표시			

운영목적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KS 품질 이상 만족)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관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 산업인증원

① 환경표지제품 인증기준

-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고려
- 품질 기준은 해당 제품별 한국산업규격[☞]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저탄소제품 인증기준

- 제품의 전과정(원료 채취, 수송, 제조, 사용, 폐기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저탄소 제품 기준]고시의 '최대허용 탄소배출량' 이하 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인 제품

※ 최대허용 탄소배출량: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의 동종제품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값

※ 최소탄소감축률: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에 기초한 3.3%

③ 우수재활용 제품(GR) 인증기준

- 현장심사기준은 제품 전과정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내 폐자 원 재활용률 및 재활용 기술 등 제품의 우수성 검토
- 제품표준은 재활용 원료별·제품별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 등을 검토

4. 기본원칙

제1조. 녹색구매 방침

- 1) 캠텡은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며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재활용 인증제품,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폐기물 저감물품 등 기타 환경성이 인증되는 녹색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캠텡은 환경보전과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녹색구매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물품 발굴과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캠텡은 원부자재 조달, 공정, 운영, 유통, 폐기물 처리 등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녹색구매 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4) 캠텡은 주된 사업활동에서의 자재 구매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집기 비품 등 소모성 자재를 비롯하여 전사적 구매 업무에서 녹색구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조. 녹색구매 예외 사항

캠텡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 제품 구매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 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3) 녹색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부족하여, 예산 내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
- 4)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5) 발주처나 사업부문의 요청 또는 현장별 상황에 따라 녹색제품 외의 특정 품목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제3조. 녹색구매 업무범위

- 1) 녹색구매 담당팀의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물품 구매 시, 품질, 가격 이외에 친환경 물품 우대 검토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환경 물품 구매실적 관리

2) 녹색구매 담당팀은 본 표준을 관리하고 공급사 평가 시 친환경 물품의 환경 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 보유 유무 및 환경 통제체계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서 보유 업체의 경우 가점을 부과한다.

5. 관리체계

1) 거버넌스

캠텍은 효과적인 녹색구매 정책 이행을 위해 경영관리팀을 주관부서 (이하 '주관부서'로 정하여 운영하며, 최고이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주관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녹색구매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의 주요 역할은 녹색구매 현황 모니터링과 목표 수립, 녹색구매 정책 승인, 이행방안 검토, 그 외에 녹색구매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으로 한다.

2) 이행체계

① 캠텍은 효과적인 녹색구매 실천 및 녹색구매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녹색구매 현황 모니터링, 녹색제품 및 녹색 공급처의 발굴 및 도입, 녹색구매 실적 평가 및 중장기 목표 수립 등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캠텍은 녹색구매 실적 및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6. 신고 (사이버 감사실)

1) 신고 접수

본 정책의 위반 또는 관련 고충사항 발생시 누구라도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캠텍

은 신고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한다.

▣ 신고 채널

- 팀명 : 경영관리팀
- 이메일 : 5257602@seohan.com
- 전화 : 043-530-3721
- 사이버 감사실 : https://www.kamtec.co.kr/dh/sustain08_1

2) 처리 절차

신고 및 제보 접수시 아래 단계에 따라 조치한다.



- ① 제보 내용이나 확인 절차에 따라 조치 일정이 다르며,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서로 이관하여 조치될 수 있다.
- ② 처리결과통보는 별도의 서면회신 절차없이 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③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한다.
- ④ 제보자는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3) 제보자 보호

비밀보장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분보장 : 제보,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

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한다.

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7. 제,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 일자	주요 개정 내용	비고
0	2026. 04. 30	최초 제정	-